

2026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· 회의소집 통보일자	2026. 9. 8.
· 평의원 정수	13명
· 재적 평의원	12명

1. 일시 2026년 9월 14일(월) 오후 3시

2. 장소 대학평의위원회실

3. 참석평의원 및 불참평의원

구분	인원	성명
참석 평의원	8명	정홍용, 양고승, 박종철, 박철현, 김광원, 윤경원, 배종용, 이철영
불참 평의원	4명	김명식, 김민철, 조만혁, 박진성

4. 출석관계자

- 조선대학교: 김도경 대학원장

5. 회의 내용

가. 성원 보고: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(회의) 제4항 '평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'에 의거하여 재적 평의원 12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.

나. 개회 선언: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2026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

다. 부의 안건

1.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- 학과 신설(바이오메디융합학과, 에이지테크융합학과, 라이프케어융합학과)

라. 안건 심의

1) 1호 안건 :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- [학과 신설(바이오메디융합학과, 에이지테크융합학과, 라이프케어융합학과)]

■ 제안 설명: 김도경 대학원장

■ 개정 사유

- 글로벌대학사업 추진에 따라 바이오메디융합학과, 에이지테크융합학과 및 라이프케어융합학과 등 융합학과 신설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, 학문 간 연계 및 융합형 교육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2027학년도 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·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- 글로벌대학사업의 웰에이징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학과·전공 및 교육과정을 연계한 융합형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, 웰에이징대학원을 별도의 모집단위 또는 학위수여 단위가 아닌 일반대학원 내 특성화 체계로 운

영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- 대학원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준비와 학업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업을 위한 특별휴학을 신설하고, 창업휴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대학원생이 소속 학과(전공) 외의 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 제도를 신설하고,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추가 수강학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융합역량 강화 및 맞춤형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「AI·디지털기반 창업인재양성 사업」선정에 따라 AI·디지털 및 창업 등 신산업 분야의 융합·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■ 주요 내용

- 별표 1(제4조 제1항 관련): 글로벌대학사업 추진에 따른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메디융합학과, 에이지테크융합학과 및 라이프케어융합학과 등 3개 융합학과의 신설 사항을 반영함.
- 제13조 제5항: 대학원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준비와 학업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업을 위한 특별휴학을 신설하고, 창업휴학을 최대 4개 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함.
- 제23조 제3항 제5호 신설: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학기당 3학점, 재학 중 총 6학점 범위에서 추가 수강을 허용하여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지원함.
- 제27조의4 신설: 웰에이징 분야의 융합형 교육·연구 및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웰에이징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. 다만, 별도의 모집단위 또는 학위수여 단위로 설치하지 아니하며, 학생의 선발·정원·학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르도록 함.
- 제27조의5 신설: 학생이 소속 학과(전공) 외의 전공 또는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복수전공의 신청자격, 이수학점, 학위수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.
- 제27조의6 신설: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대응하고 융합·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.
- 별표 2(제28조 제3항 관련): 3개 융합학과의 학위종별을 신설하여 해당 학과 학생의 석사·박사학위 수여 근거를 마련함.
- 부칙: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3개 융합학과의 설치 및 학위종별에 관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7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하도록 함.

■ 심의 내용

- 제출된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제3장 등록, 휴학, 복학, 제적 및 자퇴
제13조(휴학)

「⑤ 학생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을 위한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창업휴학은 4개 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.」
를 아래와 같이 문구수정하기로 함

